

부속서 9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제1조
정의

1. 대한민국의 경우,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이란 물리적 기간시설, 공장, 건물, 설비 또는 그 밖의 정부 소유 사업의 신축 또는 재건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약적 약정을 공급자가 이행하는 대가로서 조달기관이 공급자에게 계약기간 동안 사업의 임시 소유권 또는 이를 통제하고 운영하며 사용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정된 기간 동안 부여하는 모든 계약적 약정을 말한다.

2. 영국의 경우,

공공사업 실시 협약이란 사업 시행에 대한 대가가 오로지 그 사업을 이용하는 권리에 있거나 이 권리와 지급에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공공사업 계약과 동일한 유형의 계약을 말한다.

공공사업 계약이란 중앙품목분류 제51대분류의 의미에서의 활동들의 하나와 관련된 사업의 시공이나 설계 및 시공 모두, 또는 수단을 불문하고 계약당국이 명시한 요건에 상응하는 사업이나 사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사업이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경제적 또는 기술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일체로서 받아들여지는 건축 또는 토목 사업의 산출물을 말한다.

제2조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 가능한 규칙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1.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자국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각 당사국은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자국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그 당사국이 국내 상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 또는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관한 모든 법, 규정, 절차 및 관행에 대하여, 자국의 조달기관을 포함하여 당사국은 국내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공급자를 국내에 설립된 다른 공급자보다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근거로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예정된 조달의 공고

3. 각 당사국은 조달기관이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예정된 건설 · 운영 · 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의 공고를 이 부속서 제4조에 기재된 적절한 공식적인 지면 또는 전자 매체에 공표하도록 보장한다. 공고는 관심 있는 공급자들이 무료로, 가능하다면 단일 접근점을 통해 접근가능하도록 하여 관심 있는 공급자들이 계약의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예정된 계약의 공고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조달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조달기관을 접촉하고 계약과 관련된 모

든 관련 문서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나. 계약에 대한 기술

다.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 주소와 마감일자

라. 제출되는 입찰서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의 하나 또는 복수의 언어

마. 공급자의 참가를 위한 모든 조건의 목록과 간략한 기술, 그리고

바. 계약의 낙찰에 사용되는 주요 기준

낙찰 공고

4. 이 부속서 제3조의 적용대상인 각 계약의 낙찰 후 적절한 기간 이내에,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 제4조에 기재된 적절한 공식 지면 또는 전자 매체에 조달기관 및 낙찰자의 명칭과 주소를 적시하여 그 계약의 낙찰이 공개되도록 보장한다.

재심

5.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인 권한 있는 당국의 결정에 대한 효과적인 재심 제도가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이 의무는 특별한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제도의 창설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규칙 및 절차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조건으로, 이 부속서는 양 당사국이 중소기업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수행한 조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안보 및 일반적 예외

7.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에 필수 불가결한 조달에 관련된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8.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당사국 간에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부속서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의 조치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도덕, 질서 또는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다.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 라. 장애인, 자선단체 또는 교도소 노동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되는 조치

제3조

적용범위

- 1. 이 부속서는 15,000,000 특별인출권을 넘는 가액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및 공공사업 실시 협약에 적용된다.
- 2. 영국에 관하여, 이 부속서는 유럽연합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 부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공공사업 실시 협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 3. 대한민국에 관하여, 이 부속서는 대한민국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

속서에 기재된 기관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 그리고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¹의 건설·운영·이전 방식 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

공표수단

1.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의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 그리고 1994년도 정부조달협정을 대체하거나 개정하는 협정의 상응하는 부속서에 있는 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지방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2. 영국의 경우, 이 협정의 발효 시에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공표 수단

¹ 대한민국의 경우, **지방정부**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정부를 말한다.